

임원의 결격사유 게시

대구광역시산악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3조 1항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.

제30조(임원의 결격사유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 개정 '20.03.25>
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(회장으로 한정한다)
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개정 23.01.27.>
< 개정 '20.03.25>
 3. ~7. 삭제< '20.03.25 >
 8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본회와 구·군협회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사람(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.)<개정 23.01.27.,2024.01.24.>
 9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본회와 구·군협회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<개정 23.01.27.>
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 - 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<개정 23.01.27.>
- 9의2.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신설24.01.00.>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9의3. 선수를 대상으로 「형법」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신설2024.01.24>
10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본회와 구·군협회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(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.) <개정 23.01.27., 24.01.24.>
11.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의원<개정 23.01.27.>
12. 사회적 물의,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<개정 23.01.27.>
13. 대한체육회 이사회, 시체육회 이사회 및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

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<개정 23.01.27., 2024.01.24.>

- ② 회장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·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·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<개정 23.01.27.>
- ④ 체육회 관계단체 및 (사)대한산악연맹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⑤ 임원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.

2024년 12월 22일

대구광역시산악연맹 선거운영위원회

